

6월 한 달 동안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

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1일 새로운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장 안전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청취를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으로 「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」를 6월 한 달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[붙임 1] 지방관서-본부 합동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계획 참조

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위험성평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5월에는 전국 지방관서 부서장 및 감독관,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, 이번 6월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주체인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시평가 도입, TBM을 통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고시 개정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한 현장 안전활동을 독려한다.

또한,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인 ①위험성 수준 3단계(저·중·고) 판단법, ②체크리스트법, ③핵심요인 기술법(One Point Sheet)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「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」를 배포한다.

* [붙임 2] 쉽고 간편한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 3가지 이해하기 참조

아울러, 민간재해예방기관 종사자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기술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정리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「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」도 동시에 배포한다.

고용노동부는 6월말까지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기간(5.22.~6.30.)을 운영 중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	책임자	과 장	금정수 (044-202-8920)
		담당자	사무관	안영곤 (044-202-8823)
주무관	이상백 (044-202-8825)			

지방관서	일시	장소	담당자	연락처
서울청	6.23(금) 14:00	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7층 대강당	최지수 감독관	02-2250-5775
서울남부지청	6.14(수) 14:00	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지하2층 대회의실	여인세 감독관	02-2639-2270
중부청	6.23(금) 14:00	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시본부 대강당	구하라 감독관	032-460-6248
부천시청	6.28(수) 14:00	복사골문화센터 513호	남경우 감독관	031-714-8780
의정부지청	6.22(목) 14:00	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지하1층 대강당	김병호 감독관	031-850-7639
고양지청	6.27(화) 14:00	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3층	김주환 감독관	031-931-2872
성남지청	6.01(목) 13:30	한국잡월드 1층 한울강당	정숙경 감독관	031-788-1576
안양지청	6.26(월) 14:00	안양고용노동지청 3층 중회의실	김재호 감독관	031-463-7359
강원지청	6.21(수) 14:00	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2층 강의실	이원기 감독관	033-269-3589
원주지청	6.14(수) 14:00	강원도경제진흥원 지하1층 대강의실(소양강)	장래준 감독관	033-769-0824
태백지청	6.20(화) 14:00	삼표시멘트(삼척공장) 안전체험장	오광진 감독관	033-550-8634
부산청	6.15(목) 14:00	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대회의실	김예찬 감독관	051-850-6485
부산동부지청	6.22(목) 14:00	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대회의실	김정은 감독관	051-559-6639
부산북부지청	6.23(금) 14:00	양산 BTC아카데미 대강당	이승대 감독관	051-309-1559
창원지청	6.27(화) 14:00	문성대학교 컨벤션홀	강대웅 감독관	055-239-6592
울산지청	6.01(목) 14:00	울산박물관 대강당	서정우 감독관	052-228-1891
양산지청	6.21(수) 14:00	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1층 교육장	신진길 감독관	055-370-0938
진주지청	6.29(목) 14:00	한국남동발전 강당	제혜선 감독관	055-760-6568
통영지청	6.20(화) 14:00	통영리스타트 플랫폼 3세미나실	윤태훈 감독관	055-650-1948
대구청	6.20(화) 14:00	안전보건공단 경북안전체험교육장 2층	류치욱 감독관	053-667-6395
	6.28(수) 14:00	안전보건공단 경북안전체험교육장 2층		
대구서부지청	6.15(목) 14:00	(사)대구기계부품연구원 1층 글로벌홀	노주호 감독관	053-605-9162
구미지청	6.30(금) 14:00	칠곡 호국평화기념관 세미나실	김유호 감독관	054-450-3561
영주지청	6.29(목) 10:00	한국폴리텍대학교 영주캠퍼스 산학협력관 세미나실	이광욱 감독관	054-639-1151
광주청	6.15(목) 14:00	광주고용노동청 대강당	황혜정 감독관	062-975-6330
	6.20(화) 14:00	광주고용노동청 대강당		
익산지청	6.22(목) 14:00	익산고용노동지청 대회의실	이성신 감독관	063-839-0032
제주	6.15(목) 14:00	정부제주청사 대강당	박선미 감독관	064-728-7134
대전청	6.16(금) 14:00	대전교통문화연구소 대강당 1층	이영훈 감독관	042-480-6300
청주지청	6.14(수) 14:00	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1층 회의실	김은혜 감독관	043-299-1328
서산	6.15(목) 14:00	서산출장소 4층 회의실	이용호 감독관	041-661-564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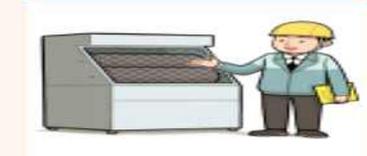
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

정의	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, 위험성 수준을 "상·중·하", "고·중·저"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		
요약	<p>① 유해·위험요인 파악</p> <p>유해·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</p> 	<p>② 위험성 결정</p> <p>'상'·'중'·'하'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</p> 	<p>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</p> <p>안전조치 실시</p> 

체크리스트법

정의	평가 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 "O", "X" 등으로 표시하여 목록에 제시된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방법		
요약	<p>① 유해·위험요인 파악</p> <p>체크리스트 항목 작성</p> 	<p>② 위험성 결정</p> <p>각 항목별로 허용 가능한 수준 여부 판단</p> 	<p>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</p> <p>안전조치 실시</p> 

핵심요인 기술법

정의	영국 산업안전보건청(HSE), 국제노동기구(ILO)에서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고, 유해·위험요인이 많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방법		
요약	<p>① 유해·위험요인 파악</p> <p>①어떤 유해·위험요인이 있는가? ↓ ②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? ↓ 파악</p> 	<p>② 위험성 결정</p> <p>③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무엇인가? ↓ ④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? ↓ 평가 결정</p> 	<p>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</p> <p>안전조치 실시</p> 

붙임 3

위험성평가 실천 현수막 홍보 계획

- (목적) 위험성평가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일제 현수막 홍보
- (기간) '23.5.22.(월) ~ 6.30.(금), 5주간
- (방법) 현수막 시안을 “중대재해 사이렌” 등 네트워크에 등록하여 사업장 자율 게시 유도
- (사업장 자율 게시용 현수막 시안)



- (안전원팀 포함 사업장 자율 게시용 현수막 시안)

